

2017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7. 1. 11 (수요일), 14:00 ~ 17:1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최성락, 고혜령, 김권구, 김서현, 김왕직,
류제헌, 성종상, 심정보, 이만형, 이재범,
한필원, 허창수(이상 12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공 개)
2	사적 제298호 남원읍성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공 개)
3	사적 제231호 홍성 홍주읍성 내 평화의소녀상 설치	(공 개)
4	사적 제501호 보령 충청수영성 주변 도로 개설	(공 개)
5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주변 CJ 본사 증축	(공 개)
6	사적 제330호 서울 효창공원 내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건물 증축	(공 개)
7	사적 제136호 강화 참성단 주변 하늘전망대 설치	(공 개)
8	사적 제48호 관문성 주변 외동 부영 기업형 임대주택(뉴스 테이) 신축	(공 개)
9	사적 제12호 공주 공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10	사적 제58호 부여 나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11	사적 제481호 부여 홍산현 관아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12	사적 제6호 경주 황룡사지 보호구역 내 지반조사	(공 개)
14	사적 제99호 부여 쌍북리 요지 주변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공 개)
15	사적 제431호 홍성 홍주의사총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 개)
16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 개)
17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 개)
18	사적 제452호 강화 외성 주변 전통한옥 이전·증축	(공 개)
19	사적 제452호 강화 외성 주변 우량농지 조성	(공 개)
20	사적 제327호 창원 다호리 고분군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 개)
21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내 수목(대나무) 제거	(공 개)

【검토사항】

22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공 개)
23	부산 연산동 고분군 사적 지정 검토	(공 개)
24	사적 제18호 경주 동궁과 월지 내 지반조사 계획 검토	(공 개)

【보고사항】

25	2017년도 궁·능·원 문화재 복원 및 보수정비계획 보고	(공 개)
26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공 개)

【 심의사항 】

안전번호 사적 2017-01-001

1.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풍납동 토성의 II권역에 속하는 2필지 252m²를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6년 문화재위원회 제12차 회의('16.11.09)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
 - 지정 예고일 : 2016.11.22.(문화재청 공고 제2016-316호)
 - 지정 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지정 예고결과 : 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제11호)
 -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 (3) 신청내용
 - 기존지정 면적 : 1,335필지 386,216.3m²
 - 추가지정 신청면적
 - 추가지정 : 2필지 252m²
 - 추가지정 후 면적 : 1,337필지 386,468.3m²
- (4) 지정사유
 - 풍납토성 내 II권역(핵심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참고사항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16.10.07)

- II권역은 풍납토성의 핵심권역(사적지정·매입예정지에 해당)으로 해당 권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 유 자	
						성명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40-27	대	150	150		
2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26-164	대	102	102		
합계				252	252		

2. 남원읍성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남원시 소재 사적 제298호 「남원읍성」의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시굴조사 결과 확인된 북문지 및 성벽 기저부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북벽 일부에 대해 지정구역을 추가하고 성벽 내·외곽 경계로부터 20m 정도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부의하는 사항임.
- 지난 13차 사적분과 회의('16.11.23.)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16.11.30.)하였으며, 예고기간 중 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남원읍성(사적 제298호)
 - 소 재 지 : 전북 남원시 동충동 364-1번지 일원
- (3) 신청내용<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 3필지 2,444㎡(기 지정면적 : 16필지 2,573㎡)
 -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 13필지 11,819㎡(기 지정면적 : 20필지 6,853㎡)

라. 지정조사 보고서

□ 조사일 및 조사자

- 조사일자 : 2016.10.17.(월)
- 조사자 문화재위원 ○ ○ ○ · ○ ○ ○, 전문위원 ○ ○ ○

1. 문화재 종류

- 사적
 - 남원읍성의 연장된 구역을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함.

2. 문화재 명칭

- 문화재명 : “남원읍성”으로 신청함.

■ 검토의견: 남원읍성의 연장된 체성부를 추가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남원읍성”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남원읍성은 전북 남원시 동충동, 향교동 일원에 소재하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지방 읍성이다. 광한루에서 북쪽으로 2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원읍성의 시원적인 단계는 통일신라시대 9주 5소경중 하나인 남원경으로 신문왕11년(691)에 쌓은 네모난 형태의 평지 읍성이다.

4. 연혁 유래 및 특징

- 남원읍성은 성종 23년(1492) 증축논의 되었고 중종25년(1530)이전에 증축이 완료되었다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다. 남원성의 규모는 둘레 8,199척, 높이 13척의 규모를 가졌으며 선조30년(1597) 왜적의 침입에 대비해 대대적인 수축이 이루어졌다.
- 남원은 지리적으로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진입하는 관문이자, 충청도와 경기도의 외번(外蕃)이었던 지역으로 적지 않은 정치적, 문화적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정유재란(1592) 당시 남원읍성을 거점으로 조·명 연합군은 10배가 넘는 왜군에 맞서 결사항전 하였지만 비참한 역사적 상흔을 남기고 말았다.
- 정유재란 종전 이후에도 남원읍성은 남원지역의 치소성(治所成)으로서 그 역할을 계속 하였으며,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적도(1916)상에는 남원읍성의 일곽이 잘 나타나 있지만, 이후 전라선 철도의 가설과 성곽의 무분별한 해체, 근현대의 도시개발 사업 속에서 그 옛 모습은 대부분 멸실되었다. 현재는 북쪽 일부 옛 성의 모습을 보존하고 발굴조사 및 복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남원읍성의 지리적 위치는 북위 35°24' 46.6", 동경127°23' 4.2" 있으며 해발고도 93m로 남원시가지의 하부에 대부분 묻힌 것으로 추정하며 우리나라 성곽에서 찾아보기 힘든 네모반듯한 성벽 경계구성과 내부직선 구성 등에 대한 학술적 가치가 높아 사적 제 298호로 지정(1982.11.3.)되었고 북·서벽 일부 복원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현재 사적 제298호로 지정된 서북쪽 지역과 더불어 북벽구간 및 의충로 발굴조사, 남문로 시굴조사를 진행한 결과 성벽이 보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동편 북문지 시굴조사로 북문지터 위치와 원형을 복원을 위한 근거를 확보하였으며 양마장, 해자는 발굴조사 중에 있음.
- 사적 지정 및 토지매입동의서를 제출한 개인소유 3개 필지와 사적지정 및 토지매입 합의를 완료한 한국철도공사 4필지, 농림부 1필지, 남원시 소유 6필지 총 14개 필지에 대해 문화재구역(보호구역)확대지정 하고자 함.
- 특히 한국철도공사 소유 필지는 2017년 북문 발굴조사를 비롯, 나아가 북문 복원 사업을 진행할 계획 중으로 남원읍성 복원의 토대가 될 중요한 위치로 판단됨.

6. 지정 대상 및 범위

남원읍성 문화재(보호)구역 지번 조서

○ 문화재구역(3필지, 면적: 2,4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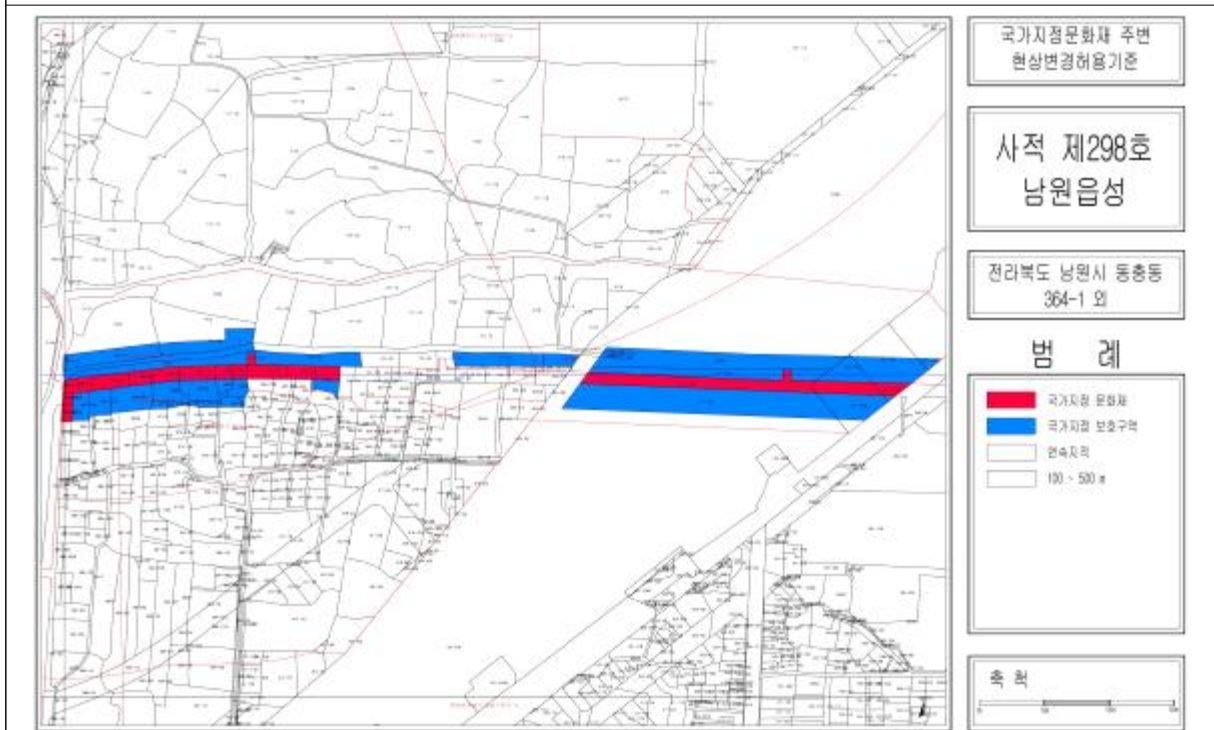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계				3,379	2,444		
1	남원시 동충동	197-148	잡	1,379	466		
2	"	197-150	잡	215	193		
3	"	197-179	철	1,785	1,785		

○ 문화재 보호구역(13필지, 면적: 11,819㎡)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계				65,730	11,819		
1	남원시 동충동	197-1	철	26,195	4,764		
2	"	197-148	잡	1,379	802		
3	"	197-150	잡	215	22		
4	"	360	대	425	200		
5	남원시 향교동	232	철	31,186	2,243		
6	"	232-14	잡	1,840	90		
7	"	232-15	잡	1,625	900		
8	"	232-16	잡	461	461		
9	"	232-30	철	1,261	1,261		
10	"	311-2	전	714	714		
11	"	311-3	답	241	241		
12	"	1021-2	철	86	67		
13	"	1028-2	구	102	54		



문화재 지정구역 지적도(2016. 7현재)



문화재 추가지정구역 지적도



2016 현재 일부 복원된 성벽(전경)



2016 현재 일부 복원된 성벽(치)



추가지정지번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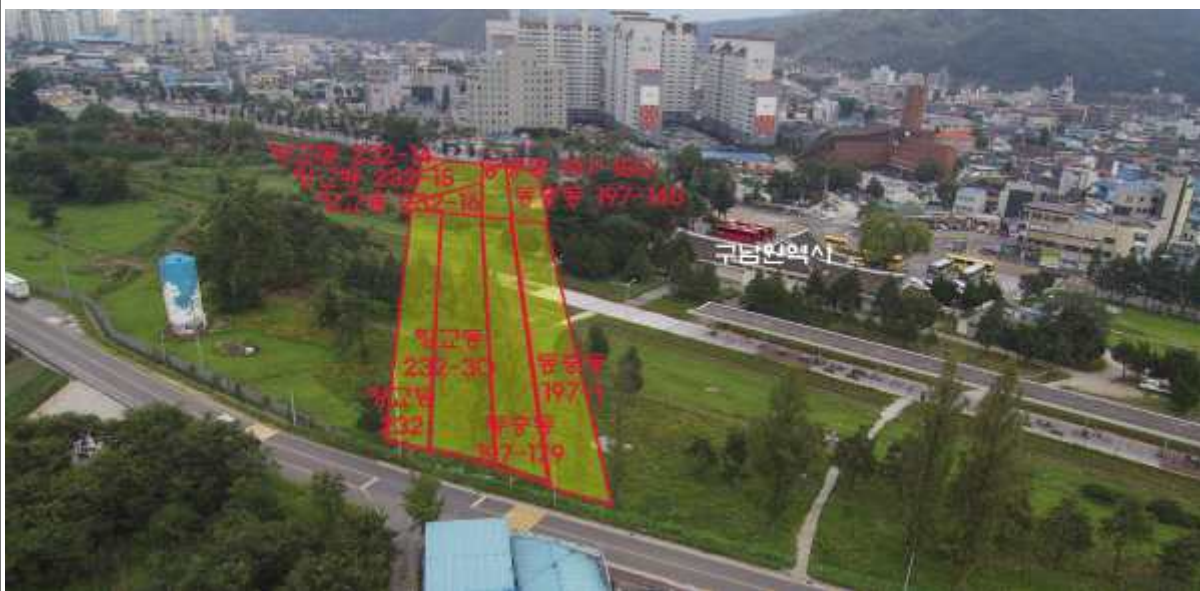
남원읍성 위성사진



향교동311-2(전), 311-3(답)



동충동36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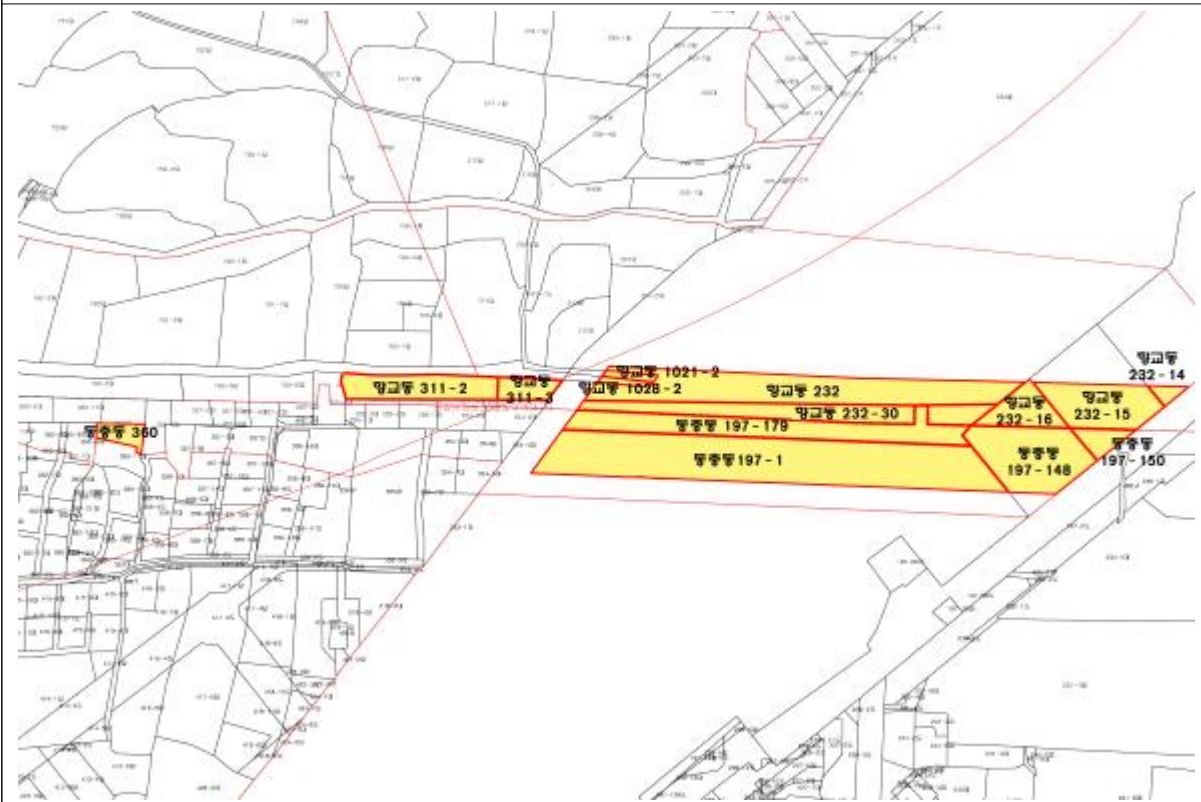
동충동197-1(철), 동충동197-150(잡), 동충동197-148(잡) 동충동197-179(철),
향교동232(철), 향교동232-30(철), 향교동 232-14(잡), 향교동 232-15(잡), 향교동
232-16(잡)



북문지 발굴조사 예정지(시굴조사 전경)



추가지정 대상지번 위치도(북측방향)



추가지정 대상지번 지적도(남측-정방향)

7.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검토의견 : 추가 지정되는 구역이 확대되지만, 현황의 허용기준을 준용하되, 중앙공원 구역에 대하여는 최소 100m 범위에 개별심의구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 심의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 개·재축 허용 ○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10% 범위 내에서 증축 허용 (단 1회에 한함) ○ 성벽(남원성 외벽라인) 및 성내부 지역은 사업시행 전 매장문화재 조사여부에 대한 발굴전문기관 검토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폐가 없을 수 있으므로 준용해 활용하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게 해드립니다. 복제 및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8.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개요

- 문화재명 : 남원읍성(사적 제298호 / 1982.11. 3 지정)
- 위 치 : 남원시 동충동 364-1번지 일원
- 사업규모 : 기존성곽 212m 구조물설치
- 총사업비/사업기간 : 31.8억원(국비22.3 도비4.75 시비4.75)/ 2012~2021(10년)
- 2016년 남원읍성 양마장 해자 정비 : 1.5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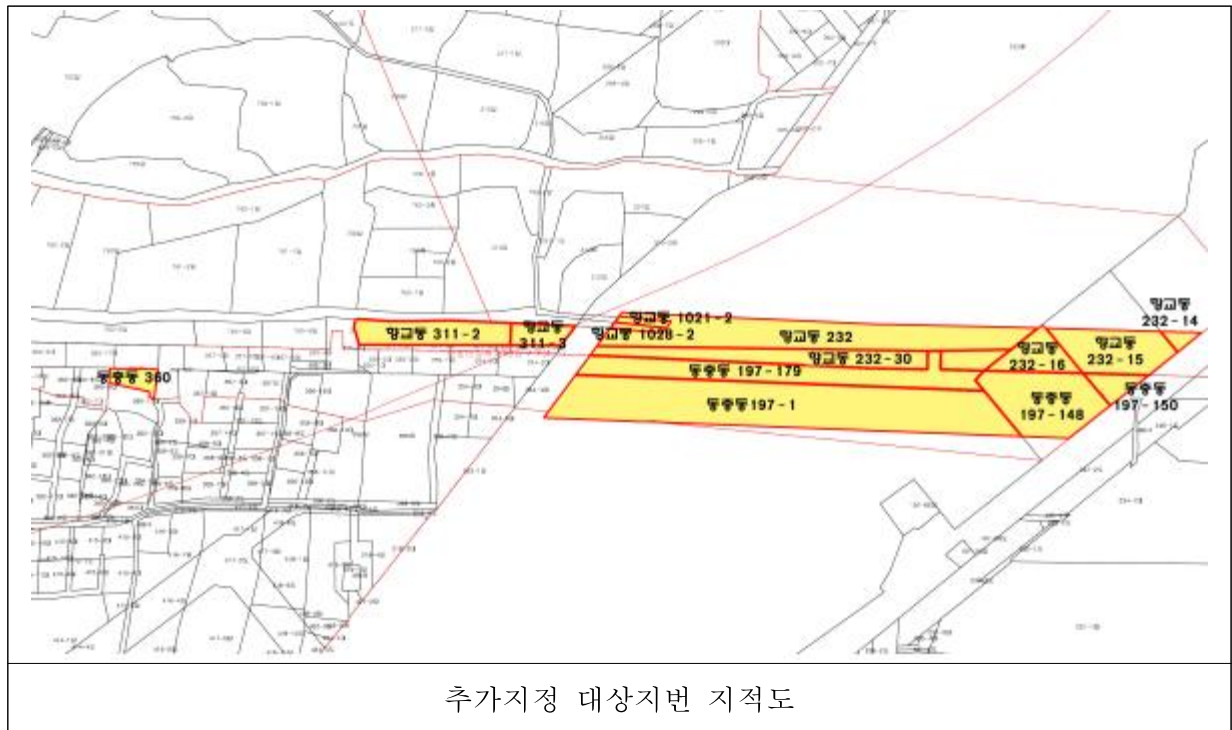
☐ 추진실적

- 남원읍성 복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 2011. 6. 완료
- 남원읍성 복원 추진(212m) : 2013. 4. 완료
- 문화재청 설계승인 완료 : 2013. 11. 17.
- 남원읍성 진입로 정비사업 완료(59백만원) : 2014. 8. 28.
- 남원읍성 북문지 시굴조사 완료(15백만원/군산대) : 2014. 10. 20.
- 남원읍성 사적 추가 신청 토지 분할 측량 (철도공사) : 2015. 8. 4.
- 광복 70주년 일제강점기 문화재 복원 프로젝트 선정 : 2015. 8. 15.
- 북문 복원(성벽·문루·성문 설치), 북 성벽(성벽, 치) 복원
- 소요예산 : 93억원(국비 65억원, 지방비28억원)

구 분	계	2016년	2017~18년	2019년	2020~25년
내 역		해자·양마장 정비	발굴조사,토지매입	북문 복원	북성벽 복원
예산(억원)	93	1	22	23	47

☐ 추진계획

- 양마장, 해자부분 정비 및 읍성진입로 포장 : 2016. 3.~
- 남원읍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 2016. 6.
- 북문지 및 북벽지 사적추가지정 신청 : 2016. 7.
- 2017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신청 : 2016. 10.
- 북문지 사적추가에 따른 주변지역 현상변경 설명회 : 2016. 12.
- 토지매입 등, 북문지 발굴조사 실시 : 2017. 3.



추가지정 대상지번 지적도

금회 추가지정 대상 14필지 중 한국철도공사 소유지인 4필지와 남원시 소유의 6필지는 (구)남원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는 도심속 향기원으로 구성되어 시민들의 문화공간과 도심속 산책로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2017년도 해당 필지에 위치한 북문지 발굴조사를 계획 중에 있으며 장기적으로 북문 복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광복70주년 일제강점기 훼손문화재 복원 프로젝트에 선정됨에 따라 더욱 복원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나머지 3필지(동충동 360, 향교동 311-2, 311-3)는 북벽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주와 매입협약이 사전에 완료되어 지정확정 고시후 순차적인 매입을 통해 주택철거 및 정비를 함으로 성벽 복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9. 종합 의견

- 현재 사적 제298호로 지정된 서북쪽 지역과 더불어 북벽구간 및 의충로 발굴조사, 남문로 시굴조사를 진행한 결과 성벽이 보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동편 북문지 시굴조사로 북문지터 위치와 원형을 복원을 위한 근거를 확보하였으며 양마장, 해자는 발굴조사 중에 있음.
- 사적 지정 및 토지매입동의서를 제출한 개인소유 3개 필지와 사적지정 및 토지매입 합의를 완료한 한국철도공사 4필지, 농림부 1필지, 남원시 소유 6필지 총 14개 필지에 대해 문화재구역(보호구역)확대지정 하고자 함.
- 특히 한국철도공사 소유 필지는 2017년 북문 발굴조사를 비롯, 나아가 북문 복원사업을 진행할 계획 중으로 남원읍성 복원의 토대가 될 중요한 위치로 판단됨.
- 따라서 금회 추가 지정 신청된 남원읍성의 구역을 지정구역·보호구역을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3. 홍성 홍주읍성 내 평화의소녀상 설치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홍성군 소재 사적 제231호 「홍성 홍주읍성」 지정구역 내에 평화의소녀상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홍성 홍주읍성 지정구역 내 홍주성역사관 전면에 평화의소녀상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홍성 홍주읍성(사적 제231호)
 - 소재지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98
- (3) 신청내용<평화의소녀상 설치>
 - 위치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0(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소녀상 설치 1식
 - 좌대 규격 L180cm×W160cm×H10cm
 - 소녀상 높이 136cm

라. 의결사항

- 부결
 - 홍주읍성의 역사성과의 관계 부족

4. 보령 충청수영성 주변 도로 개설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보령시 소재 사적 제501호 「보령 충청수영성」 주변에 도로를 개설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보령 충청수영성 주변에 도로를 개설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16.12.14(14차 위원회)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보령 충청수영성(사적 제501호)
 - 소 재 지 : 충남 보령시 오천면 931
- (3) 신청내용<도로 개설>
 - 위치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성안길 29(1구역(보존구역), 6구역(도시계획조례))
 - 사업내용(500m 이내)

구분	1안	2안	비고
허용기준	6구역(도시계획조례)	1구역(보존구역)	
최단이격 거리	270m	90m	보호구역
도로 연장	1,920m	1,130m	
도로 폭	9.5m(2차로)	9.5m(2차로)	
터널 연장	-	2개소 250m(폭 16m(4차로))	
육교	1개소 15m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6.12.28/문화재위원 ○ ○ ○)
 - 대안 1과 대안 2 모두 충청수영성으로부터 상당한 이격거리를 지니고 있으며, 대부분의 구간이 영보정에서 조망되지 아니함.

- 대안 2는 기존 취락지구를 관통해야 하고, 2개의 터널의 사이에 일종의 보조간선도로를 개설해야 하므로 교통사고를 촉발할 개연성이 상당하고, 대안 1에 비하여 공사비가 상당히 높은 반면에 실익은 별로 없다고 평가함.
- 대안 1에서는 5% 정도의 경사도 구간이 발생하나 교통 흐름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고, 절·성토량이 상당하나 통상적인 수준을 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며, 경관 훼손 정도도 심하지 않음.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1안으로 시행

5. 서울 한양도성 주변 CJ 본사 증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주변에 CJ 사옥을 증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주변에 CJ 사옥을 증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한양도성(사적 제10호)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중구, 성북구 일원

- (3) 신청내용<건물 증축>

- 위치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500(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86m 이격)

- 사업내용

구분	기존건물	증축건물	비고
대지면적	2,429.4m ²	좌동	
건축면적	1,121.04m ²	좌동	
연면적	18,361.4m ²	18,869.9m ²	증 508.5m ²
규모	지하2층/지상18층	지상2층/지상19층	증 1층
최고높이	69.3m	87.3m	증 18m
기타	-	외관 리모델링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6.12.22/문화재위원 ○○○)

- 기존건물에서 층수는 한 개 층, 높이는 18m 정도 수직 증축하는 사항임.
- 현재 좌우 건물이 신청건물보다 높고 건물의 일부가 현상변경 심의구역에 걸쳐있으며 주변이 모두 고층건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증축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외관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재료는 문화재에 영향이 적은 무반사, 무광택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2) 서울시 한양도성도감 의견

- 신청부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로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19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제3항제1호 규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높이 기준(별표2 양각 규정)에 부적합하여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가 있음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6. 서울 효창공원 내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건물 증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사적 제330호 「서울 효창공원」 내에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건물을 증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효창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건물을 증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효창공원(사적 제330호)
 -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2가 2번지
- (3) 신청내용<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건물 증축>
 - 위치 :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255번지(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구분	기존건물	증축건물	비고
건축면적	116㎡	149㎡	증 33㎡
연면적	116㎡	732㎡	증 616㎡
규모/높이	지하1층	지상4층/17.4m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6.12.22/문화재위원 ○ ○ ○)
 - 1층의 부속건물인 전시관 건물을 4층 높이로 증축하는 건임
 - 묘역과 거리가 가깝고 온전히 가시되는 위치이므로 문화재와의 일체성 및 왜소성 등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됨
 - 본관과의 관계에서도 건축적으로 많은 간섭과 채광 및 일조 등의 문제가 예측되므로 근본적으로 증축이 어려운 위치라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경관 저해 우려

7. 강화 참성단 주변 하늘전망대 설치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136호 「강화 참성단」 주변 시설물 설치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참성단 보호를 위한 하늘전망대 설치
 - '16.12.28(15차 위원회)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참성단(사적 제136호 / 1964.07.11 지정)
 - 소 재 지 :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홍왕리 산42-1
- (3) 신청내용<하늘전망대 설치>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문산리 산55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85m 이격 /1구역)
 - 사업내용

구분		현상	'16.12.28	'17.01.11	비고
하늘전망대 (헬기장)	지름	8m	20m	20m	
	구조	철근콘크리트	목재데크, H빔	목재데크, H빔(동바리마감), 상단 난간 제거, 색상변경	
산불초소	제원	1.2m	20m	20m	

(4) 신청인 의견

- 강화 참성단은 적은 면적에 많은 인원(가을철 1일 평균 2,800명)이 몰려 이완이 진행되고 있어, 참성단을 보호하기 위함
- 낙상사고(연100여건) 등이 매년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여, 현재의 구조과정에 어려움이 많아 헬기장 확장(8m→20m)이 필요함(강화 소방서 요청)
- ※ 항공법 시행규칙 제4조(착륙대의 길이와 폭)에 의거 직경 20m 필요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8. 관문성 주변 외동 부영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신축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48호 「관문성」 주변 외동 부영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관문성 주변 외동 부영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신축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함.
- '16.10.12(10차 위원회) 부결 :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 '16.11.09(12차 위원회) 부결 :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신축 규모 및 높이 과다)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관문성(사적 제48호 / 1963.01.21. 지정)
 -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모화리 등 일원
- (3) 신청내용<외동 부영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신축>
 - 위치 : 경북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1747-60번지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150m 이격/4구역(평지붕 11m 이하, 경사지붕 15m 이하)}
 - 사업내용

구분		1차 신청	2차 신청	금회 신청(3차)	비고
건축규모	아파트	15개동	15개동	17개동	
	부속동	11개동	11개동	11개동	
	전체	26개동	26개동	28개동	
세대수		1,836세대	1,780세대	1,734세대	
건축면적		11,208㎡	11,208㎡	12,444㎡	
면적	아파트	185,187㎡	179,073㎡	176,162㎡	
	부속동	3,965㎡	3,965㎡	3,965㎡	
	전체	189,152㎡	183,038㎡	180,127㎡	
건폐율/용적율		15.73%/254.22%	15.73%/254.64%	17.47%/240.08%	
층수		20, 22, 25, 29, 31, 32	18, 20, 22, 25, 29, 31, 32	15, 20, 25, 31	
건축물 최고높이		20층(60.05m)~32층(93.65m)	18층(54.45m)~32층(93.65m)	15층(46.05m)~31층(91.03m)	

- 세부내용

구분			내용		
용 도			공동주택(아파트)		
대 지 면 적			71,237㎡		
건 축 규 모			지하2층/ 지상1~31층 (28개동)		
세 대 수			1,734세대(3단지 :1,174세대, 4단지 : 560세대)		
연면적	아파트	지하층	9,100.8512㎡		
		지상층	167,060.8194㎡		
		소계	176,161.6706㎡		
	부속동	지하층	-		
		지상층	3,964.7500㎡		
		소계	3,964.7500㎡		
	전체	지하층	9,100.8512㎡		
		지상층	171,025.5694㎡		
		합계	180,126.4206㎡		
건 폐 율			17.47 %		
용 적 율			240.08 %		
최고 높이	15층	84형	아파트층수높이(42.81m)+옥탑층높이(3.24m)=46.05m(500m이내)		6동
		20층	84형	아파트층수높이(56.81m)+옥탑층높이(3.24m)=60.05m(500m이내)	
		59형	아파트층수높이(56.81m)+옥탑층높이(3.42m)=60.23m(500m이내)		1동
	25층	84형	아파트층수높이(70.81m)+옥탑층높이(3.24m)=74.05m(500m이내)		1동
		59형	아파트층수높이(70.81m)+옥탑층높이(3.42m)=74.23m(500m이내)		2동
	31층	84형	아파트층수높이(87.61m)+옥탑층높이(3.24m)=90.85m(500m이외)		3동
		59형	아파트층수높이(87.61m)+옥탑층높이(3.42m)=91.03m(500m이외)		2동
	3층 이하		관리동, 관리실, 근린생활시설(500m이내)		9동
	3층 이하		관리실(500m이외)		2동
합 계					28동

(4) 신청인 의견

- 울산과 인접한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350여 개의 자동차 및 중공업 계통의 부품 협력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입실·모화·구어·냉천·개곡·석계 등을 중심으로 공단이 조성되어 외동읍의 상주인구가 계속적으로 유입됨에 따라 주거시설 확충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뉴스테이 사업의 일환으로 대상지에 기업형 임대주택을 건립함으로써 주변지역 서민 및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건설경기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을 도모

라. 참고사항

- 기존 인근 허가사례(부영아파트) : '14.3월
 - 사업면적 : 122,342m²
 - 건축면적 : 21,061.07m², 연면적 : 451,926.21m²
 - 최고높이 : 84.81m
 - 규모 : 총 50개동(3,230세대)
 - 11개동 : 지상 30층, 최고높이 84.81m
 - 10개동 : 지상 25층, 최고높이 70.81m
 - 5개동 : 지상 20층, 최고높이 56.81m
 - 5개동 : 지상 15층, 최고높이 42.81m
 - 19개동 : 지하 2층~지상 2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9. 공주 공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공주시 소재 사적 제12호 「공주 공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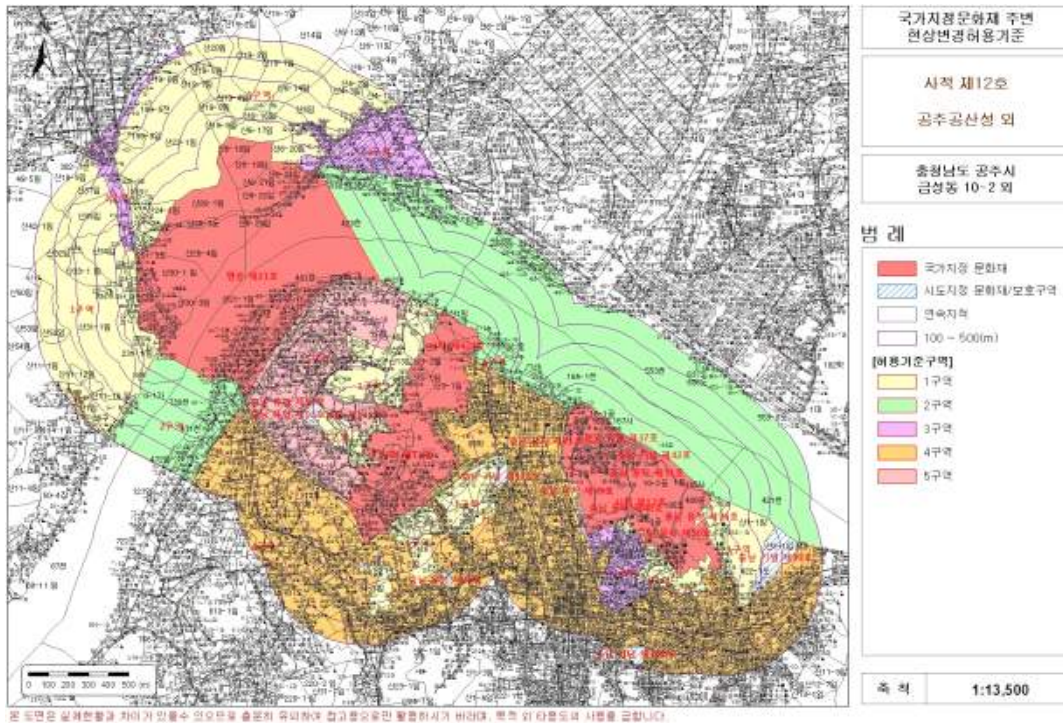
나. 제안사유

- 공주 공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검토기준에 따라 조정하려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공주 공산성(사적 제12호)
 -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산성동 2번지
- (3) 신청내용<공주 공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 현행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 신축 불가 ○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10% 범위내에서 증축 허용 (단 1회에 한함)		
제2구역	○ 신축 불가 ○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최고높이 4m이하로 허용		
제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3층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3층 이하)	
제4구역	○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제5구역	○ “공주고마나루” 주변 경관 보호를 위해 별도심의 토록 한다.		
공통사항	○ 개·재축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 조정안(역사문화환경에 대한 구역 조정 없이 허용기준만 조정)

구 분	변경허용기준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개별심의 ○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의 최고높이 4m이하로 허용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3층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3층 이하)
4구역	○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5구역	○ “공주고마나루” 주변 경관 보호를 위해 별도심의 토록 한다.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성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 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 적용)을 실시함 - 미 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라. 참고사항

(1) 고도보존육성과 및 전문가 의견(○○○ 문화재전문위원)

- 본 건은 공주 공산성의 보호구역 추가지정에 따라 허용기준을 보완(6개월 이내)하고자 하는 사항임
- 이와 함께 현재의 허용기준을 관련지침에 맞게 조정하여 법정 고시 기한 내에 우선 조정·고시하고, 공주 송산리고분군, 공주 정지산유적 등과 통합 운영되고 있는 허용기준 조정은 '17년 별도 조정을 추진할 계획임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10. 부여 나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사적 제58호 「부여 나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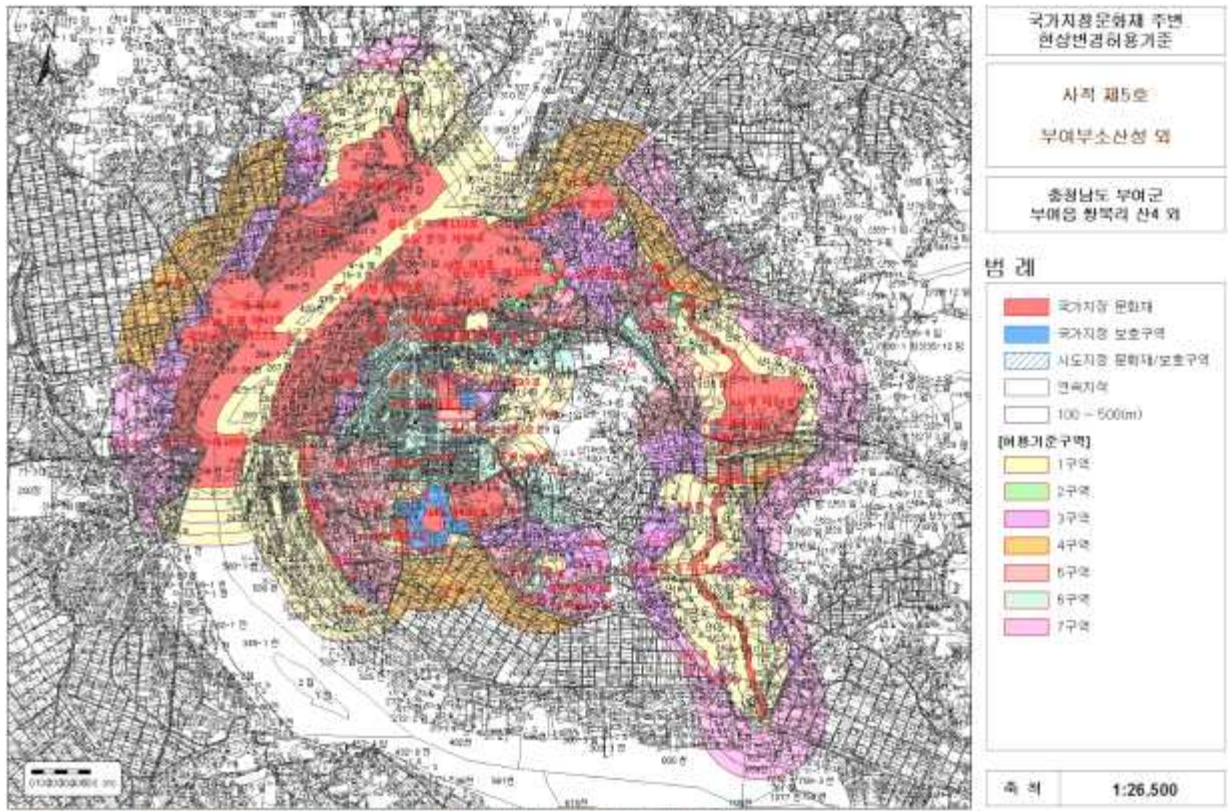
나. 제안사유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 나성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검토기준에 따라 조정하려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부여 나성(사적 제58호)
 - 소 재 지 : 충남 부여 부여군 부여읍 염창리 565 일원
- (3) 신청내용<부여 나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 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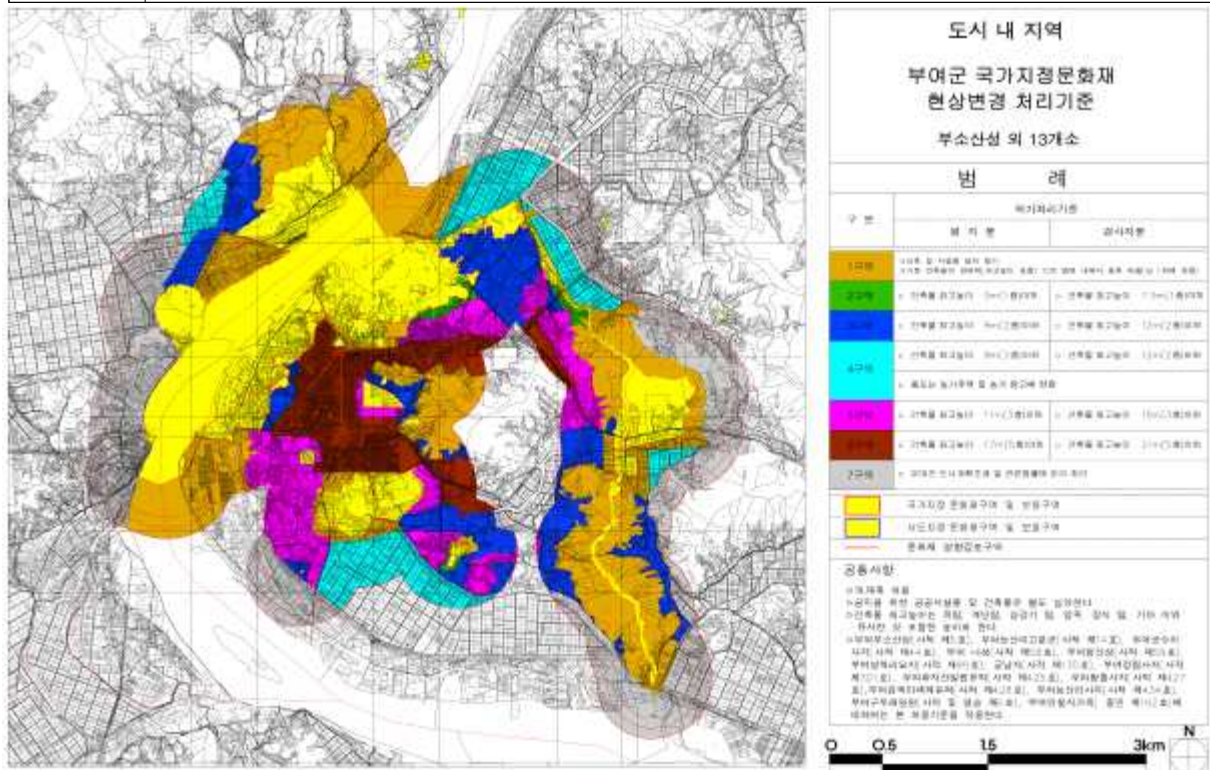
구 분	허용기준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1구역	○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10% 범위 내에서 증축 허용(단 1회에 한함)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 이하)
	○ 용도는 농가주택 및 농가창고에 한함	
5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3층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3층 이하)
6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5층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21m이하(5층 이하)
7구역	○ 부여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개·재축 허용 ○ 공익을 위한 공공시설물 및 건축물은 별도 심의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 부여부소산성(사적 제5호), 부여능산리고분군(사적 제14호), 부여군수리사지(사적 제44호), 부여 나성(사적 제58호), 부여청산성(사적 제59호), 부여쌍북리요지(사적 제99호), 궁남지(사적 제135호), 부여정림사지(사적 제301호), 부여화지산일원유적(사적 제425호), 부여왕흥사지(사적 제427호), 부여관북리백제유적(사적 제428호), 부여능산리사지(사적 제434호), 부여구두래일원(사적 및 명승 제6호), 부여민칠식가옥(중민 제192호)에 대하여는 본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 조정한

구 분	허용기준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 이하)
5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3층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3층 이하)
6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5층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21m이하(5층 이하)
7구역	○ 부여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성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구 분	허용기준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 매장문화재 출토 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 적용)을 실시함 - 미 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 장과사전 협의함 ○ 공익을 위한 공공시설물 및 건축물은 별도 심의한다. ○ 부여부소산성(사적 제5호), 부여능산리고분군(사적 제14호), 부여군수리사지(사적 제44호), 부여 나성(사적 제58호), 부여청산성(사적 제59호), 부여쌍북리요지(사적 제99호), 궁남지(사적 제135호), 부여정림사지(사적 제301호), 부여화지산일원유적(사적 제425호), 부여왕흥사지(사적 제427호), 부여관북리백제유적(사적 제428호), 부여능산리사지(사적 제434호), 부여구드래일원(명승 제63호), 부여민칠식가옥(중민 제192호)에 대하여는 본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라. 참고사항

(1) 고도보존육성과 및 현지조사 의견(○○○ 문화재전문위원)

- 본 건은 부여 나성의 지정구역 조정(추가 및 해제)에 따라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가된 부분을 확대하고, 제외된 부분은 축소 조정하는 사항임
- 현재의 허용기준을 관련지침에 맞게 조정하여 법정 고시기한 내에 우선 조정·고시하고, 부여부소산성, 부여능산리고분군, 부여군수리사지, 부여나성, 부여청산성, 부여쌍북리요지, 궁남지, 부여정림사지, 부여화지산일원유적, 부여왕흥사지, 부여관북리백제유적, 부여능산리사지 등과 통합운영되고 있는 허용기준 조정은 '17년 별도 조정을 추진할 계획임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11. 부여 홍산현 관아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사적481호 「부여 홍산현 관아」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해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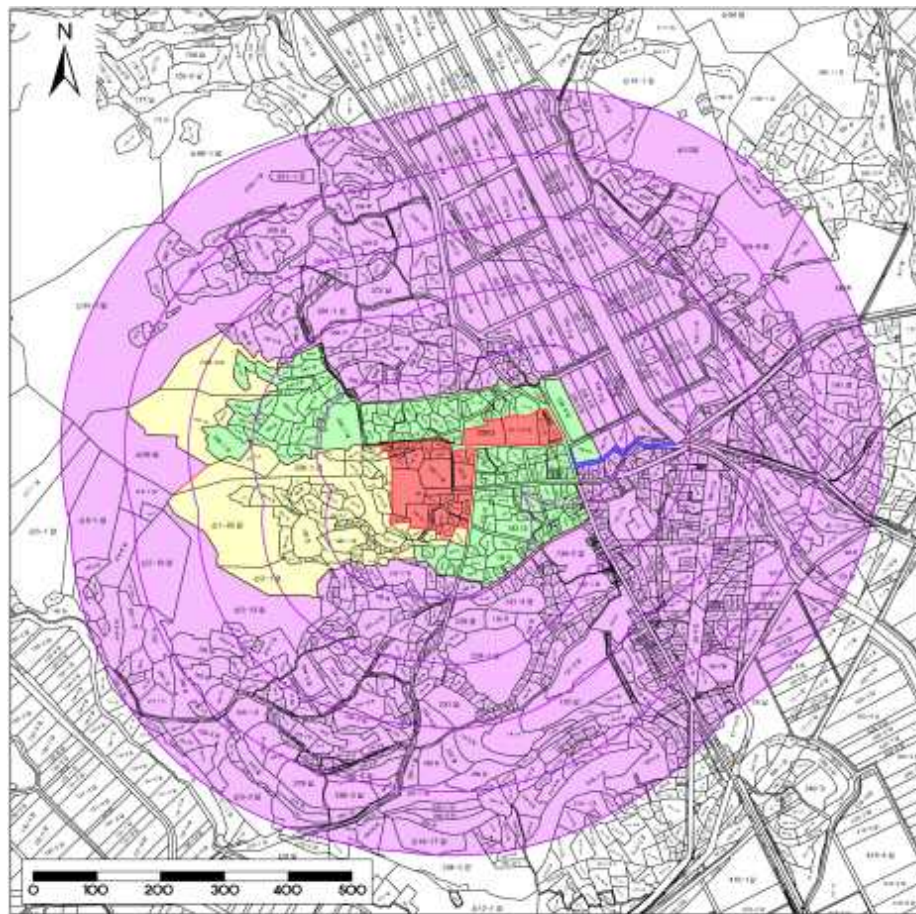
나. 제안사유

- 부여 홍산현관아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검토기준에 따라 조정하려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부여 홍산현 관아(사적 제481호)
 - 소 재 지 : 충남 부여군 홍산면 동현로 38 일원
- (3) 신청내용<부여 홍산현관아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 현행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부여군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사적 제481호

홍산현 관아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남촌리 187번지 일원

범례

- 국가지정 문화재
- 시도시장 문화재
- 연속지적
- 100 ~ 500(m)

【허용기준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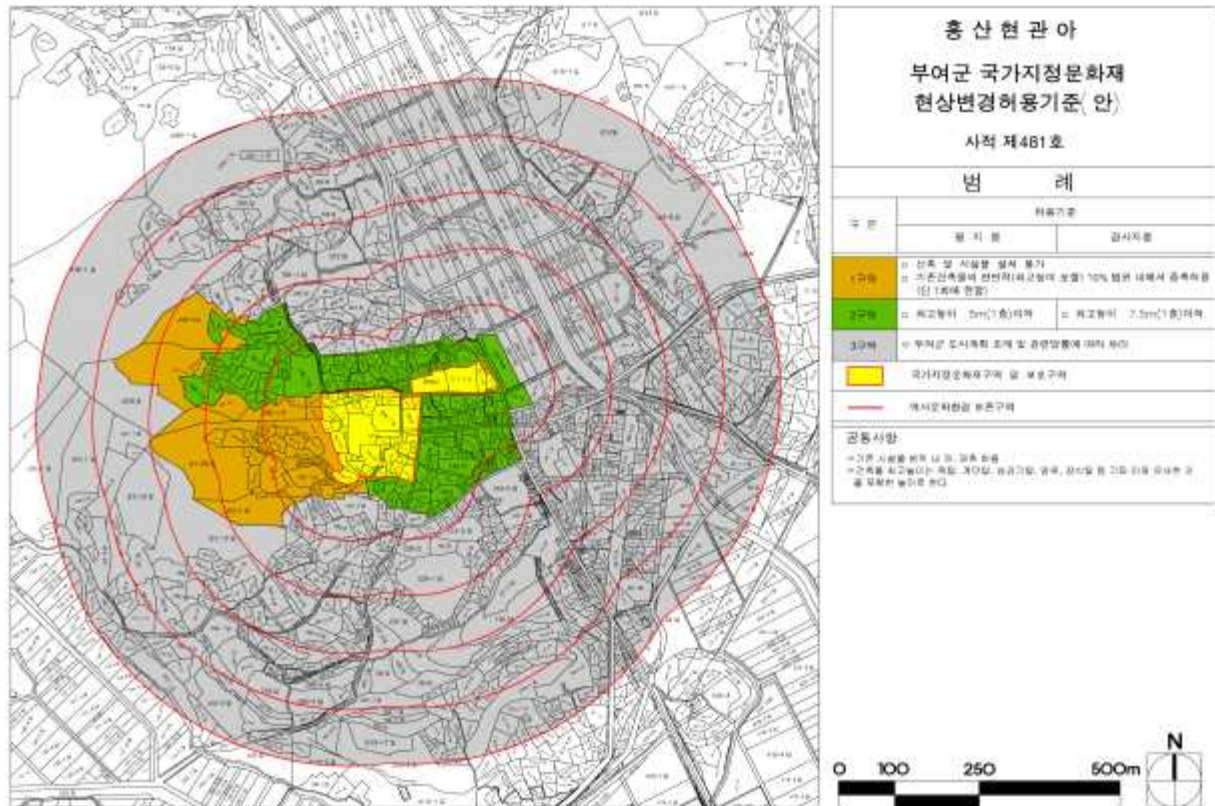
- 1구역
- 2구역
- 3구역

축척 1:5,500

본 도면은 '문화재청'의 지적 및 지리 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본 도면상의 내용은 '문화재청'의 지적 및 지리 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조정한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부여군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한변의 길이 25m 또는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라. 참고사항

(1) 고도보존육성과 및 전문가 의견(○○○ 문화재전문위원)

- 본 건은 부여 홍산현관아의 지정구역 확대에 따라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가된 부분을 확대조정하는 사항임
- 현재의 허용기준을 관련지침에 맞게 조정하여 법정 고시기한 내에 우선 조정·고시하고, 허용기준 조정은 부여 내 사적 전체에 대한 조정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17년 별도 조정할 계획임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12. 경주 황룡사지 보호구역 내 지반조사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6호 「경주 황룡사지」 문화재보호구역내에서 지반조사를 시행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6년 사적분과 제9차 회의(9월 7일)시 황룡사지 지반조사에 대한 사항이 조건부 가결(물리탐사 후 재검토)되어 일부 물리탐사(전기비저항탐사, 굴절법·표면파탐사, GPR탐사)를 시행하였음(9월 26일~10월 7일)
- 물리탐사 결과 심도 약 10m 하부의 원지반 추정층을 확인하였으며, 건물지 기초는 풍화암 수준의 지내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유구 보호 방안 수립(기초구조 설계 하중 산출)을 위한 정확한 데이터 확보 필요성 제기
- 이에 유구 훼손은 거의 없으며 지반정보 획득이 가능한 시험인 동적 콘관입 시험과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여 지반지지력 및 침하량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황룡사지(사적 제6호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구황동 320-1번지
- (3) 신청내용<지반조사>
 - 위치 : 경북 경주시 구황동 320-1번지 황룡사지(문화재보호구역)
 - 사업내용 : 동적 콘관입시험, 평판재하시험

순번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특이사항
1	동적 콘관입시험	강당지, 중금당지 목탑지와 주변 회랑지, 중문지, 남문지	· 직경 3cm, 길이 5cm정도의 콘을 금속봉에 연결하고, 금속봉에 5kg 낙하추를 자유 낙하시켜 타격하여 관입시킴	· 관입시험 완료 후 관입봉 회수
2	평판재하 시험	중금당지 모서리부 목탑지 모서리부	· 40cm×40cm 넓이의 표층의 상부 잔디를 제거한 후, 직경 30cm의 금속판에 0~10ton의 하중을 가함	· 중장비 진입 · 재하시험 완료 후 제거된 표층 원상 복원

(4) 신청인 의견

- 황룡사 유구 안정성 확보 및 유구 보호 방안 수립을 위해서는 유구의 정확한 현상파악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동적 콘관입시험, 평판재하시험을 시행하여 정확한 지반 지지력 및 침하량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라. 참고사항

- 경주시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중인 황룡사 제4차 심화연구(기초구조연구 학술용역/'15.12.4~'17.6.30.)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수행중에 있음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유구 안전조치 필요

14. 부여 쌍북리 요지 주변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사적 제99호 「부여 쌍북리 요지」 주변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해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여군 소재 부여 쌍북리요지 주변에 LG 유플러스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부여 쌍북리 요지(사적 제99호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충남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 390
- (3) 신청내용<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591-3(문화재구역으로부터 74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통신전주 설치(콘크리트, 1기)
 - 높이 13.5m(지면으로부터), 굴착 깊이 2.55m, 굴착면적 0.2㎡
- (4) 신청인 의견
 - 본 공사는 무선전화 음영지역 해소로 휴대폰 사용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공사로 토지소유주로부터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임
 - 시행 후 인근 주민의 불편으로 인하여 이설이 필요한 경우 관의 지시에 의해 철거 예정임

라. 참고사항

(1) 지자체 의견

- 금번 현상변경 허가신청 건은 사적 제99호 부여 쌍북리 요지 인근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무선전화 음영지역 내 휴대폰 통신장애를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공사임

- 신청 대상지역은 쌍북리 요지로부터 약 75m정도 이격되어 있으며, 국가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기준 1구역으로 신축 및 시설물 설치가 불가하나 인접 도로에 전신주 등 이동통신 중계기와 유사한 형태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고, 시가지 내 주변 경관을 고려해 보았을 때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15. 홍성 홍주의사총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홍성군 소재 사적 제431호 「홍성 홍주의사총」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홍성 홍주의사총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홍성 홍주의사총(사적 제431호)
 - 소 재 지 :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124-2
- (3) 신청내용<근린생활시설 신축>
 - 위치 :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336-4(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m 이격)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465㎡
 - 건축면적 : 93㎡
 - 연면적 : 186㎡
 - 규모 : 지상2층(9m)
 - 구조 : 일반철골구조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16. 강화산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주변 단독주택신축 공사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화산성 주변에 단독주택 3개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산성(사적 제132호 / 1964.06.10 지정)
 - 소 재 지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3번지
- (3) 신청내용<단독주택신축>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16, 산16-6(문화재구역으로부터 25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대지/신청면적:3,690㎡/2,143㎡
 - 건축면적:3개동 257.45㎡(1동:64.65㎡,2동:96.40㎡,3동96.40㎡)
 - 높이 : 각 1층(1동 5M, 2~3동:5.625M)
 - 오수처리시설(15인조), 석축(총길이=268)
- (4) 신청인 의견
 - 신청구역은 1구역이나 문화재로부터 250m 이격되어 보이지 않음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17. 강화산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주변에 진입로를 개설하여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화산성 주변에 진입로를 개설하여 단독주택을 신축하려는 사항임.
- '16.07.27(6차 소위원회)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16.08.24(7차 소위원회)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16.10.26(11차 위원회)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16.11.23(13차 위원회)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산성(사적 제132호 / 1964.6.10. 지정)
 - 소재지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3 일원
-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9-9, 10-2{문화재구역으로부터 40m 이격 / 1구역(개별심의)}
 - 건축개요

구분	10.26 부결	11.23 부결	'17.1.11 심의 사항	비고
대지면적(㎡)	1,593(대지면적 1,436, 진입로 157)	2,435(대지면적 718, 진입로 92)	718(대지면적 718)	진입로 미신청
건축면적 / 연면적(㎡)	91.36 / 365.44	91.36 / 182.72	91.36/182.72	
층수 / 높이	지상 1층(4개동) / 5.5m	지상 1층(2개동) / 5.5m	지상 1층(2개동) / 5.5m	
구조 / 지붕	목구조 / 경사지붕	목구조 / 경사지붕	목구조 / 경사지붕	

(4) 신청인 의견

- 전체 시설물관리는 사업주가 직접관리하며, 불법적인 전용면적의 확장이 없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할 것임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08.12/문화재위원 ○○○)

- 신청부지는 1구역으로 주변 주택단지에서 산 정상부 쪽으로 유일하게 올라간 위치로 입지적인 조건이 문화재 주변경관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18. 강화 외성 주변 전통한옥 이전·증축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452호 「강화 외성」 주변 전통한옥을 이전·증축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성북구 성북동 35-7에 위치한 전통한옥(1959년 신축)을 이전하여 증축하여 거주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외성(사적 제452호 / 2003.10.25. 지정)
 - 소재지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일대
- (3) 신청내용<전통한옥 이전·증축>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옥림리 104-1, 105{문화재구역으로부터 250m 이격/1구역(개별심의), 2구역(평지붕5m,경사지붕7.5m)}
 - 사업내용
 - 대지면적/건축면적/연면적 : 2,302㎡/221.02㎡/245.08㎡
 - 규모 : 지상1층, 지하1층(창고)
 - 전통한식목구조, 철근콘크리트
 - 높이 : 각 1층(5.860m)
- (4) 신청인 의견
 - 기존 전통 한옥과 연계한 관광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신규로 증축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성·절토 없이 활용하는 설계로 계획했음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19. 강화 외성 주변 우량농지 조성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452호 「강화 외성」 주변 우량농지조성을 위한 형질변경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현재 논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량농지로 조성하기 위해 토지형질 변경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외성(사적 제452호 / 2003.10.25. 지정)
 - 소 재 지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일대
- (3) 신청내용<토지 형질변경>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280-6, 280-16(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0m 이격/1구역)
 - 신청내용
 - 부지면적 : 11,556㎡
 - 매립 높이 : 1.8m
 - 기 타 : 폴리에틸렌 이중벽관(외경=500mm) 234m 설치
- (4) 신청인 의견
 - 신청지는 도로 옆으로 현행 답으로 가계소득을 위하여 농지개량하고자 하는 사항임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20. 창원 다호리 고분군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사적 제327호 「창원 다호리 고분군」 주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창원 다호리 고분군 주변에 종교집회장을 신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창원 다호리 고분군(사적 제327호 / 1988.09.03 지정)
 - 소 재 지 : 경남 창원시 동읍 다호리 232번지 일대
- (3) 신청내용<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 위치 : 경남 창원시 동읍 다호리 272-7{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m이격 / 2구역(평지붕5m, 경사지붕7.5m)}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962㎡
 - 건축면적/연면적 : 192㎡/384㎡
 - 건축구조 : 경량철골구조
 - 높이 : 7.49m
 - 기타 : 주차장(2대), 오수처리시설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21. 경주 남산 일원 내 수목(대나무) 제거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문화재구역 내 수목(대나무)을 제거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남산 일원 문화재구역 내 수목(대나무)을 제거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남산 일원(사적 제311호)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남산동 남산 일원
- (3) 신청내용<수목(대나무) 제거>
 - 위치 : 경북 경주시 남산동 1064-2(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남산동 1064-2번지 4,932㎡중 4,000㎡ 대나무 제거 작업
- (4) 신청인 의견
 - 농지법 위반(농지가 농업 경영이 불가능한 임야상태)에 대한 해소와 아동 양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일성복지재단 대자원에 이전 가능한 농지로 변경하여 심리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진 아동들에게 텃밭 가꾸기, 어린이 숲해설가, 자연미술놀이터, 곤충체험 등 자연과 함께하는 다양한 치료프로그램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함.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 필요
 - 지형변경 최소화

【 검토사항 】

안전번호 사적 2017-01-022

1.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풍납동 토성의 II권역에 속하는 2필지 248m²를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제11호)
 -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 (3) 신청내용
 - 기존지정 면적 : 1,337필지 386,468.3m²
 - 추가지정 신청면적
 - 추가지정 : 2필지 248m²
 - 추가지정 후 면적 : 1,339필지 386,716.3m²
- (4) 지정사유
 - 풍납토성 내 II권역(핵심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참고사항

-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16.12.12)
 - II권역은 풍납토성의 핵심권역(사적지정·매입예정지에 해당)으로 해당 권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 유 자	
						성명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41-23	대	93	93		
2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22-1	대	155	155		
합계				248	248		

2. 부산 연산동 고분군 사적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재 「부산 연산동 고분군」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위치하고 있는 「부산 연산동 고분군」의 국가지정 문화재(사적)로의 지정 가치 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부산 연산동 고분군(부산광역시 기념물 제2호, '72.6.26. 지정)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산90-4
- (3) 지정신청 명칭 : 부산 연산동 고분군(釜山 蓮山洞 古墳群)
- (4) 지정신청 범위 : 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 신청면적 : 문화재구역 33필지 66,068㎡
- (5) 관리단체(안) : 부산광역시 연제구
- (6) 신청사유
 - 낙동강 하류지역의 고총고분군으로서 삼국시대 부산의 역사와 문화는 물론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밝히고 고대의 선진적이고 전통적인 토목·건축기술의 원형을 구명할 수 있는 특별한 사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자 함.

라. 현지조사의견('15.06.08./문화재위원 ○ ○ ○, 전문위원 ○ ○ ○, ○ ○ ○)

(1) 종별 및 명칭(안) 검토

- 종별 : 사적
- 명칭(안) : 부산 연산동 고분군(釜山 蓮山洞 古墳群)으로 신청함.
 - 검토의견 : 지정명칭 부여 기준인 지역명+문화재명에 의해, “부산 연산동 고분군(釜山 蓮山洞 古墳群)”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2) 입지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부산 연산동고분군은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산 90-4·5·7번지 일원으로 현재 부산시내의 거의 중심부에 해당함. 해발 427.9m의 황령산에서 북쪽으로 뻗은 지맥에 속하는 표고 254m의 배산(盃山)의 북쪽으로 뻗어 나온 40m~60m 전후의 완만한 능선에 위치하는 고분군으로 능선의 정상부를 따라 대형의 성토분구를 가진 고분 18기가 남북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음.
- 고분군 주위는 삼한,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의 유적 밀집지역으로 온천천 북쪽 동래역 일대에는 복천동 고분군(사적 제273호)과 연산동 고분군을 만든 사람들의 마을과 동래패총(사적 제192호)이 위치하고, 북서쪽에는 조선시대 동래읍성지가 위치함.
- 온천천을 사이에 두고 복천동 고분군과 연산동 고분군이 마주보고 있으며, 남쪽 배산 일대에는 통일신라시대에 축성된 배산성이 남쪽에는 통일신라~고려시대의 동래군 치소인 동래고읍성지가 있고, 그 남쪽에는 경상좌수영성지가 위치함.

(3) 연혁·유래 및 특징

- 부산 연산동 고분군은 1987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7차례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조사 결과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규모가 큰 수혈식석곽이 확인됨.
- 연산동 고분군은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의 삼국시대 부산지역에서 유일한 거대 고총 고분군이자 석곽 및 봉분 축조 과정마다 매장 과정을 보여주는 의례행위가 확인되었고, 해안에 위치하여 삼국시대 해양세력의 존재 양태를 구명할 수 있는 등의 자료를 제공하는 유적임.

- 발굴조사·봉분 복원공사 등에 따른 현상변경
 - 2008. 6월: 연산동고분군 정비·복원 계획 수립
 - 2009. 3월: 고분군 숲 가꾸기 사업(봉분 위의 수목 제거)
 - 2009.10월: 고분군 우수관거 설치
 - 2009.12월: 매장문화재 발굴(1차)
 - 2011. 6월: 매장문화재 발굴(2차)
 - 2012. 8월: 매장문화재 발굴(3차)
 - 2013. 2월: 봉분 복원 보수정비공사
 - 2013. 7월: 봉분 복원공사 등
 - 2013.11월: 수목제거, 배수로 설치

(4)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가치

- 연산동고분군은 부산지역의 유일한 고총고분군으로서 1940년 이전인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갑주류가 출토되어 주목받았고,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1972년 6월에 부산직할시 유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었음.

- 1987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7차례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조사 결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수혈식석곽이 확인되었으며, 삼국시대의 첨단 토목·건축 기술을 구명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천동고분군과 더불어 삼국시대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구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서 평가되어왔음.
- 연산동고분군은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의 삼국시대 부산지역에서 유일한 거대 고총고분군이자 석곽 및 봉분 축조 과정마다 매장 과정을 보여주는 의례행위가 확인되었고, 해안에 위치하여 삼국시대 해양세력의 존재 양태를 구명할 수 있는 등 부산지역 고대사 복원에 절대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유적임이 확인되었음.
- 연산동고분군의 고총고분의 봉분 조사를 통해 연약지반 강화, 구획성토와 작업로, 소형의 점토피 사용, 봉분 하중 감속 및 완화, 단면 삼각형의 흙둑 쌓기·부엽공법 등 다양한 토목기술이 구현되었고, 점토 미장과 고정 기술, 거대한 뚜껑돌 이동과 안전한 적재를 위한 건축기술, 밀봉을 위한 등 삼국시대의 선진 토목 및 건축기술이 확인되어 우리의 전통 토목·기술의 원형 구명 및 복원을 위한 최적의 유적임.
- 복천동고분군의 묘제 및 구조 등을 계승하면서 신라의 토기 등 선진문화를 받아들여 융합하고 발전시킨 유적으로 판단됨.

(5) 지정 대상 및 범위 검토

- 사적 지정 신청은 문화재구역 33필지 66,068㎡ 신청함.

■ 검토의견 : 신청범위는 정적함



(6)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검토

■ 검토의견 : 고분군 주변은 이미 주택과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상황으로 신청안대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 DAUM[리]

항 목	허 용 기 준		
	평 지 붕	경사지붕(3:10이상)	용 도
1구역	○ 개별심의		100m 이내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21m이하	500m 이내
4구역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1~3구역 내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1~3구역 내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터파기 시에는 관계 전문가 입회하여 매장문화재의 존재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여부를 결정함.은		

(7) 종합 의견

- 부산 연산동 고분군은 부산지역의 고총고분군으로서 1940년 이전인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갑주류가 출토되어 주목받았고,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1972년 6월에 부산직할시 유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었음.
- 1987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7차례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청동기 시대 집석유구 4기, 삼국시대 고총고문 18기·분묘 136기, 삼국시대 취사시설 3기, 토기편 집중유구 2기, 구상유구 2기, 벽구시설 1기, 주혈군 1기, 고려시대 수혈유구 1기, 고려·조선시대 분묘 110기, 건물지 추정유구 3기, 가마 1기, 묘역석 2기, 조선시대 이후 수혈 1기 등 총 284기의 유구가 확인되었음.

- 출토유물은 삼국시대 및 조선시대 분묘에 부장된 토도류 및 금속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확인된 수량은 총 3,700여점임.
- 또한 조사 결과, 석곽 및 봉분 축조 과정마다 매장 과정을 보여주는 의례행위가 확인되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수혈식석곽이 확인되었으며, 삼국시대의 첨단 토목·건축 기술을 구명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북천동고분군과 더불어 삼국시대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구명할 수 있는 유적으로서 평가되어왔음.
- 그러나 현재, 고분군의 주체나 성격에 있어 가야고분인지 신라고분인지 분명하게 규정하기 어려워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임.
- 따라서, 향후 추가적인 학술 검토를 거쳐 고분군의 주체나 성격이 명확해진 시점에 사적 지정이 재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사항

(1) 사적(신청지) 지정 면적 조서

○ 문화재구역

문화재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지정구역)						(면적: m ²)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 ²)	지정면적 (m ²)	소유자	
						성명	주소
계				66,068	66,068		
1	연산동	산90-4	임	164	164		
2	"	산90-5	임	694	694		
3	"	산90-7	임	14,408	14,408		
4	"	산90-18	도	81	81		
5	"	산90-19	임	5,078	5,078		
6	"	산90-20	임	993	993		
7	"	산90-21	임	1,828	1,828		
8	"	산90-22	임	6,507	6,507		
9	"	산90-23	임	169	169		
10	"	산90-24	임	27	27		
11	"	산90-25	임	21	21		
12	"	산90-26	임	37	37		
13	"	산90-27	임	42	42		
14	"	산91-1	임	218	218		
15	"	산91-3	임	1,874	1,874		
16	"	산92-2	임	4,860	4,860		
17	"	산120-1	임	13,918	13,918		

18	"	산120-2	임	62	62		
19	"	산121-1	임	4,265	4,265		
20	"	산121-2	임	198	198		
21	"	산121-3	임	99	99		
22	"	산121-4	임	2,952	2,952		
23	"	산121-5	임	11	11		
24	"	산121-6	임	45	45		
25	"	산122	임	1,074	1,074		
26	"	산122-1	임	1,057	1,057		
27	"	산122-2	임	348	348		
28	"	2274	공원	2,764	2,764		
29	"	913-2	대	36	36		
30	"	914	전	231	231		
31	"	914-1	전	1,987	1,987		
32	"	915-4	전	17	17		
33	"	915-5	대	3	3		

(2)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기준(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

문화재의 종류	지정기준
사적	-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로서 해당 문화재가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크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 - 선사시대 또는 역사시대의 사회·문화생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가질 것 -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생활 등 각 분야에서 그 시대를 대표하거나 희소성과 상징성이 뛰어날 것 - 국가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것 - 국가에 역사적·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저명한 인물의 삶과 깊은 연관성이 있을 것 - 해당 문화재의 유형별 분류기준 - 조개무덤, 주거지, 취락지 등의 선사시대 유적 - 궁터, 관아, 성터, 성터시설물, 병영, 전적지 등의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 - 역사(驛舍)·교량·제방·가마터·원지(園池)·우물·수중유적 등의 산업·교통·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 서원, 향교, 학교, 병원, 절터, 교회, 성당 등의 교육·의료·종교에 관한 유적 - 제단, 지석묘, 옛무덤(군), 사당 등의 제사·장례에 관한 유적 - 인물유적, 사건유적 등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기념과 관련된 유적

바.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3. 경주 동궁과 월지 내 지반조사 계획 검토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18호 「경주 동궁과 월지」 내 서편 건물터 복원·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동궁과 월지 지반조사 계획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궁과 월지 종합정비 기본계획 및 설계를 문화재위원회 검토(사적분과, '15.12.9.)를 거쳐 수립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건물터 복원·정비 실시설계 추진 중임
- 건물터 복원에 따른 지반의 지지력 평가 및 평가결과를 반영한 실시설계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지반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검토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동궁과 월지(사적 제18호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인왕동 515-1번지 일원
- (3) 신청내용<동궁과 월지 지반조사 계획>
 - 위치 : 경북 경주시 인왕동 515-1번지 일원(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조사방법 : 시추조사를 통한 표준관입시험(시료채취, 지하수위 측정 등)
 - 조사범위 : 복원 대상 건물터 적심부 등 9개소
 - 조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개월 내외
 - 장비/굴착깊이 : NX시추기(6톤)/ 시추공(84mm), 기반암 아래 2m까지 굴착

라. 참고사항

- 당해 조사계획은 2016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항임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유구를 피해 시행할 것

【 보고사항 】

안전번호 사적 2017-01-025

1. 2017년도 궁·능·원 문화재 복원 및 보수정비계획 보고

가. 제안사항

2017년도 궁·능·원 내 고건물 및 시설물 보수복원 정비사업과 수목병충해방제 등 조경정비사업 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합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청에서 직접관리하고 있는 경복궁 등 4대궁·종묘·세종유적·조선왕릉관리소 고건물 및 시설물 보수복원 정비사업, 조선왕릉능제복원사업, 수목병충해 방제 등 조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문화재청 자체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자 보고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경복궁 등 4대궁, 종묘, 세종유적, 조선왕릉
- (3) 사업기간 : 2017. 1~12월
- (4) 사업내용

시행기관	대상문화재	사 업 명	소요예산 (천원)	신청자
궁능 문화재과	사적 제117호 경복궁	경복궁 홍복전 권역 복원 공사(3차) 등 3건	4,519,133	궁능문화재 과장
	사적 제122호 창덕궁	창덕궁 선정전·회정당 주변 및 낙선재 일원 조경정비	41,000	
	사적 제124호 덕수궁	덕수궁 선원전지 경계벽 설치공사(2차) 등 5 건	2,200,000	
	사적 제125호 종묘(사직단)	사직단 전사청 권역 등 정비 설계 용역 사직단 부대시설 정비공사(2차) 등 4건	1,500,000	
궁능 문화재과 직영사업단	궁·능·원	경복궁 아미산 굴뚝 보수 등 218건	238,000	궁능문화재 과장
세종대왕유 적관리소	사적 제195호 영릉(英陵) · 영릉(寧陵)	영·영릉(英·寧陵) 유적 종합정비 사업(2단계) 등 9건	5,798,000	세종대왕 유적 관리소장
경복궁	사적 제117호	경복궁 야간경관조명 개선사업 등 17건	3,207,000	경복궁

관리소	경복궁			관리소장
창덕궁 관리소	사적 제122호 창덕궁	창덕궁 매표소 주변 종합정비 사업 등 11건	3,800,349	창덕궁 관리소장
창경궁 관리소	사적 제123호 창경궁	대온실 보수공사 2차 등 10건	2,903,000	창경궁 관리소장
덕수궁 관리소	사적 제124호 덕수궁	덕수궁 담장 보수공사 등 8건	909,000	덕수궁 관리소장
종묘 관리소	사적 제125호 종묘	동측 노후 외곽 담장 보수공사 등 7건	587,600	종묘 관리소장
조선왕릉 관리소	조선왕릉	고양 서오릉 명릉 수복방 복원 등 39건	8,861,000	조선왕릉 관리소장
동부지구 관리소	사적 제193호 동구릉	들꽃길, 단지 조성사업 등 6건	305,000	조선왕릉 동부지구 관리소장
	사적 제364호 명빈묘	역사경관림 및 울타리 정비 1건	70,000	
	사적 제207호 홍릉·유릉	봉분 사초지 정비 등 3건	140,000	
	사적 제209호 광릉	광릉 주차장 노면정비 등 2건	40,000	
	사적 제356호 순강원	정문 진입로 주변 정비 1건	20,000	
	공통사항	산관람객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등 8건	712,000	
중부지구 관리소	사적 제201호 태릉·강릉	태릉 사초지 잔디보식 공사 외 5건	74,000	조선왕릉 중부지구 관리소장
	사적 제208호 정릉	정릉 관람로 주변 들꽃길 조성 사업 외 3건	58,000	
	사적 제194호 현인릉·인릉	현인릉 매표소 입구 배수로 정비 외 4건	190,000	
	사적 제199호 선릉·정릉	선정릉 관람편의 시설물 정비 외 5건	60,000	
	사적 제204호 의릉	의릉 관람객 화장실 내부 보수공사 외 6건	145,000	
	사적 제361호 영휘원·송인원	영휘원 사무실 주변 차양 설치	6,000	
	공통사항	중부지구 능침주변 및 경내 소나무 숲음전정 사업 외 2건	326,000	
서부지구 관리소	사적 제198호 서오릉	대빈묘 주변 수종갱신지 수목 이식 등 3건	70,000	조선왕릉 서부지구 관리소장
	사적 제200호 서삼릉	관리사무소 정비 등 3건	149,870	
	사적 제202호 김포장릉	재실 주변 들꽃 식재 등 4건	451,000	
	사적 제206호 융릉·건릉	관리사무소 정비 등 5건	250,149	
	사적 제205호 파주삼릉	정문 주변 들꽃 식재 등 3건	85,000	

	사적 제203호 파주장릉	정문 및 재실 주변 조경 정비 1건	30,000	
	사적 제358호, 359호 소령원, 수길원	진입로 주변 조경 정비	20,000	
	사적 제210호 양주온릉	봉분 주변 수목 제거	20,000	
	사적 제357호 광명 영회원	정문 주변 조경 정비 등 2건	50,000	
	공통사항	산책로 및 관람로 정비 등 7건	445,000	
궁·능원, 유적기관 공통사항		궁능 수목식재, 제거, 이식 등 조경관리		궁·능유적 관리소장
		궁능 관람로 등 관람시설물 유지보수		
		궁능 방범방재시스템 등 관리시설물유지보수		
		궁능 설해, 풍수해 등 피해(응급) 복구		
		문화재 관람환경 개선 및 관람서비스 향상을 위한 경미한 보수 정비 사항 등		

라. 향후 추진계획

-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궁·능·원 문화재복원 및 보수정비 사업은 자체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업(공사, 용역, 경상관리 등) 추진
- ※ 직영사업단 보수공사 내용
 - 2016년 보수실적 : 선정릉 (선릉)곡장 해체 보수 등 376건
 - 2017년 보수계획 : 경복궁 아미산 굴뚝 보수 등 218건
- 추후 직접 시행하는 궁·능·원 보수, 복원, 정비 중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문화재위원회 부의하여 사업 추진

마.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보고할 것

2.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6호 「경주 황룡사지」 내 전국연날리기 대회를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등 14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6호 경주 황룡사지	경북 경주시	○○○	<전국연날리기 대회> ○ 위치 : 경북 경주시 구황동 320번지 일원(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방패연싸움대회, 어린이 가오리연 날리기대회, 읍·면·동 대항전 - 체험행사 : 전통연 전시, 가오리연 만들기 체험 · 가설천막 : 5동(전통연 전시 2동, 연 만들기 체험 1동, 진행 및 안내 2동) · 천막 규격 : 5m × 5m · 행사장 면적 : 약 1,000㎡ ○ 허가조건 - 행사 완료 후 신속히 원상복구함	조건부 허가	'17.01.04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서울시 중구	○○○	<주택 발코니 확장> ○ 위치 : 서울시 중구 신당동 822-20 ○ 사업내용 - 주택 2층 발코니 확장(3.61㎡)	허가	'16.12.19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서울시 중구	○○○	<안전난간 설치> ○ 위치 : 서울시 중구 예장동 산5 ○ 사업내용 - 안전난간 설치 약 40m ○ 허가조건 - 안전난간 기초 설치 시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시행합니다. - 안전난간은 주변의 기 설치된 형식으로 설치합니다. - 안전난간 설치 시 성곽 적심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벽끝선에서 2m이상 안쪽으로 들어 설치하고 설치구간도 최소화합니다.	조건부 허가	'16.12.27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서울시 종로구	○○○ 외 2	<건축물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254-7 ○ 사업내용 - 연면적 : (당초)562.64㎡→(변경) 564.81㎡ - 건물높이 : (당초)16.8m→(변경) 17.1m	허가	'17.01.09
사적 제118호 진주성	경남 진주시	○○○	<야외석조물 공원 이전부지 지반조사> ○ 위치 : 경남 진주시 남성동 169번지 17호 ○ 사업내용 - 조사방법: 보링테스트(유압식 시추기 사용) - 시추조사(굴착지름:75mm, 1공), 표준 관입시험(30회), 실내(물성)시험 ○ 기간 : 2017.01.02~2017.04.03	허가	'16.12.27
사적 제230호 천안 유관순 열사 유적	충남 천안시	○○○	<특수학교 신축> ○ 위치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탑원리 115-16 외 3필지(문화재구역 으로부터 270m 이격)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17,325㎡ - 건축면적 : 3,445.31㎡ - 연면적 : 5,461.55㎡ - 규모 : 지상2층(10.8m)	허가	'17.01.09
사적 제237호 서울 경모궁지	서울시 종로구	○○○	<가설건축물 축조>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21 ○ 사업내용 - 가설건축물 1동 축조(2층, 연면적 352.4㎡)	허가	'16.12.18
사적 제243호 서울 석촌동 고분군	서울시 송파구	○○○	<발굴조사(허가사항 변경허가)> ○ 사업내용 : 석촌동 고분군 발굴조사 ○ 허가기간 연장 - 당초 : '15.8.14~'16.12.31 - 변경 : '15.8.14~'17.12.31	허가	'17.01.09
사적 제243호 서울 석촌동 고분군	서울시 송파구	○○○	<다세대주택 신축>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44-8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205.10㎡ - 건축면적 : 123.00㎡ - 연 면 적 : 399.57㎡ - 규 모 : 지상5층(최고높이 16.9m) - 구 조 : 철근 콘크리트조 - 용 도 : 다세대주택	허가	'17.01.09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297호 서울 몽촌토성	서울시 송파구	○○○	<2017 새해맞이 한마당 행사 개최>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88-3 (문화재구역) ○ 일자 : 2017.1.1.(일) 07:00~08:30 - 내용 : 타종행사, 북바구니 터트리기, 만세삼창 등	허가	'16.12.19
사적 제297호 서울 몽촌토성	서울시 송파구	○○○	<지하철 공사(허가사항 변경허가)> ○ 사업내용 : 지하철 921공구 공사 ○ 허가기간 연장 - 당초 : '10.12.24~'15.12.31 - 변경 : '10.12.24~'18.12.31	허가	'17.01.09
사적 제297호 서울 몽촌토성	서울시 송파구	○○○	<스포츠시설 조성>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88 ○ 사업내용(아래 사업 중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지상층 조정공간 조성 2,809.07㎡, 지하층 주차장 조성 553.36㎡ 해당) - 대지면적 : 123,492.3㎡ - 건축면적 : 8,060.42㎡ - 연면적 : 38,446.8㎡ - 규모 : 지하3층/지상4층 - 용도 :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허가	'17.01.09
사적 제402호 통영 삼도수군 통제영	경남 통영시	○○○	<온돌방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위치 : 경남 통영시 문화동 62번지 (문화재구역) ○ 내용 - 아궁이 불 지피기 및 온돌방 체험 등 ○ 기간 : 2016. 12. 28.~2017. 02. 28.	허가	'16.12.28
사적 제523호 여수 석보	전남 여수시	○○○	<건물 신축> ○ 위치 : 전남 여수시 봉계동 454-11 외 2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420m 이격 /5, 6구역) ○ 사업내용 - 건축면적 164.66㎡(연면적 329.32㎡) - 건물높이 10.85m	허가	'17.01.09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